|  |  |  |
| --- | --- | --- |
| **《회계종업자격 시험 관리규정》**  **에 관한**  **통지**  재회[2013]19호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 재정국, 중앙중공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재무관리사, 인민해방군총후근부 재정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후근부 재정부:  회계종업자격시험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종업자격시험을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회계종업자격 관리방법》(재정부령제7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종업자격 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한바, 그대로 집행하여 주기를 바란다.  첨부: 회계종업자격시험관리규정  재정부  　　2013년 9월 25일  첨부:  **회계종업자격 시험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회계종업자격시험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종업자격시험을 규범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회계종업자격관리방법》등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했다.  **제2조** 회계종업자격시험과목은 페이퍼리스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과목에는 재경법규와 회계직업도덕, 회계기초, 회계전산화(또는 주산)가 있다.  **제3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은 통일지도, 분급관리의 원칙을 따른다. 재정부는 전국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제정과 회계종업자격시험대강, 시험합격기준을 발표하고, 조직개발, 회계종업자격시험문제 및 시험문제 데이터를 구축하며,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재정청(국)이하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정국, 중앙중공직속기관사무관리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 중국인민해방군총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후근부(이하 ‘중앙주관단위’)의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을 지도한다.  각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정국 및 중앙주관단위가 본 지역(부문, 계통)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종업자격시험규칙제정, 회계종업자격시험 데이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재정부 하달의 회계종업자격시험문제 접수 및 관리, 회계종업자격시험 조직전개, 회계종업자격시험분위기, 시험기율의 감독점검 및 법에 의거하여 시험규정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진행한다.  **제4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본지역(부문, 계통)응시자, 시험좌석수량, 분포 등 상황에 따라 시험주기, 시험계획 및 시험장설치를 매년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5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의 각 과목 시험시간, 문제유형, 문제수, 시험점수환산치, 합격기준 등 시험요구는 재정부가 문제데이터 하달 시 함께 발표한다.  **제2장 시험신청**  **제6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본 지역(부문, 계통)의 응시시간, 응시방법, 시험규칙, 시험관련요구, 응시조건 및 시험과목을 확정하고, 사전에 발표해야 한다.  **제7조** 응시자는 발표한 응시시간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한 사이트(또는 장소)에서 응시신청을 제출하고 개인 기본 정보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응시자는 응시신청 시, 한꺼번에 세가지 시험과목을 기입해야 한다. 회계전산화 및 주산시험을 조직하는 각성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응시신청자가 상기 두 과목 중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회계법》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나열된 위법상황 발생으로 인해 법에 따라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회계종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재 취득할 수 없다.  허위회계보고서 제공, 분식회계, 회계증빙, 회계장부, 재무회계보고서의 은닉이나 고의소각, 횡령, 공금유용, 직무침범 등 회계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자는 회계종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수 없으며,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취득하거나 재 취득할 수 없다.  **제10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현지물가부문이 승인한 기준에 따라 응시자에게 시험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11조**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보증하기 위해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하급기구가 사용하는 시험사무비용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2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의 시험사무비용은 전문적으로 회계종업자격시험작업의 각 지출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곳에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장소 설치상황에 따라 하급기구의 시험장 배열작업을 진행하거나 지도를 해야 한다. 시험 전에 응시 완료된 응시자가 개통한 사이트에 스스로 로그인하여 수험표를 인쇄하도록 알려줘야 한다.  **제3장 시험장 설치**  **제14조** 시험장소 및 시험장의 설치는 편리, 집중 원칙에 따라야 하며, 응시인원수 및 분포상황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15조** 회계종업자격시험 장소는 원칙상 성 직할시 이상 도시에 설치되어야 한다. 응시인원수가 비교적 많고, 시험장소 설치조건이 현(시, 구)에 부합한 경우, 성급재정부문은 해당 현(시, 구)에 회계종업시험장소의 추가설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회계종업자격시험 장소에는 전자시험장, 서버기계실(캐비닛), 시험사무판공실, 응지자 대기구역, 화장실 등이 독립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응자자 대기구역은 적합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7조** 시험장소 및 시험장은 안전, 안정, 밝고 넓어야 하며, 양호한 통풍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방열, 방화, 전기충격방지 등의 보호 조치, 응급처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시험장소에는 시험서버기, 시험컴퓨터, 예비컴퓨터, 무정전 전원 장치, 근거리통신망 등 페이퍼리스 시험은 필요한 소프트웨어 설비를 구축해야 하며, 시험장은 페이퍼리스 시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제19조** 회계종업자격시험장에는 신분식별설비, 감독설비 등 필요한 부정행위 방비 설비를 설치하고, 대리시험, 표절, 귓속말, 물품교환, 통신설비 사용 등의 부정행위를 방비해야 한다.  **제20조** 회계종업자격시험시험장에는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고, 시험장 소프트웨어 설비의 보수 및 돌발 고장의 처리를 책임진다.  **제21조** 회계종업자격시험시험장에는 회계종업자격시험관련 지도, 훈련작업을 전개할 수 없다.  **제22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각 시험장소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평가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장은 기한 내에 완벽하게 개조하고, 개조 후에도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회계종업자격시험장으로 삼을 수 없다.  **제23조** 각 시험장에는 시험입구처 등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시험장 명칭을 표시하고, 사전에 시험장 안내도, 시험시간표, 시험장 규칙 등을 게시해야 한다. 각 시험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시험장소번호 및 시험좌석(자리)시작과 끝 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제4장 시험문제의 전송과 보관**  **제24조** 회계종업자격시험 시험문제는 ‘등급관리, 단계별책임’, ‘누가 접수하고, 누가 책임지나’의 원칙에 근거하여,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사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 시험장 소지재 인민정부재정부문(이하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 및 시험장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비밀보장안전책임제를 실시한다. 규정 제도와 수속에 따라 교체와 보관을 진행하고, 비밀보장 및 안전은 기밀누설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하게 방지해야 한다.  **제25조**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주요책임자가 현지시험문제에 대해 비밀보장 안전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첫 번째 의무는 비밀보장 책임이며, 책임서에 서명하는 것이다. 정식 재적인원 중에 설치전문인원은 구체적으로 비밀보장관리작업을 책임져야 하며, 구체적인 비밀보장 책임을 진다.  **제26조** 전국 통일 시험문제은행은 재정부가 정기적으로 CD방식으로 각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에 발송한다. 문제은행의 교체는 엄격한 교체수속을 진행해야 하며, 교체 양측은 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교체 양측은 인계한 CD 중의 문서내용 등을 대조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밀봉처리를 하고 양측은 교체증빙상에 서명 날인을 진행한다.  **제27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문제은행을 완벽하게 보관하고, 하급기구 또는 시험장 전체에 문제은행을 하달할 수 없다.  중국 인민해방군총후근부,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후근부는 특수한 상황으로 하급기구 전체에 문제은행을 하달해야 하는 경우, 재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전용컴퓨터에 저장한 문제은행을 제출해야 하며, 기밀과 관련된 스탠드 얼론 기준에 따라 보호와 관리를 진행하며, 명확한 기밀등급과 책임인 표시를 붙인다. 해당 컴퓨터는 공공 인터넷과 엄격하게 물리 분리를 진행하고, 2단계의 작동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작동비밀번호에 키디스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각각 두명의 비밀보장인원이 관리한다.  **제29조** 문제은행 CD는 내용이 전용 컴퓨터에 도입한 후 즉시 소각하거나 전용 캐비닛에 보관한다. 캐비닛 열쇠는 2명이 각각 보관하며, 캐비닛 오픈 비밀번호는 2단계로 설정하여, 두명의 비밀보장인원이 각각 1단계씩 관리한다.  **제30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작업과정을 규범화시키고, 문제은행보관등기등록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없는 인원이 문제은행을 보관한 캐비닛 또는 컴퓨터에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험문제를 풀기시작하거나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전용 컴퓨터 또는 문제은행CD를 사용할 수 없다.  **제31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 전, 전용 서버에서 문제은행에 근거하여 랜덤으로 시험지를 생성해야 한다. 시험지 생성 시, 암호화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엄격하게 시험지의 생성시간을 통제하고, 충분하게 필요한 시험지 수량과 서버기 작업성능 등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32조** 문제은행에 근거하여 생성한 시험지는 온라인 전송 또는 CD저장장치로 전송할 수 있다.  (1) 재정인트라넷 또는 단위 내부 전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는 경우, 디지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하며, 지정한 전문가는 관련 조작규범 사용전용계정에 따라 한꺼번에 조작을 완료해야 한다.  (2)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상기 (1) 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 가상사설통신망(VPN)등 기술을 통해 전송과정 중의 비밀보장성,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3) CD저장장치로 전송할 경우, 문제은행의 교체와 보관방식을 참조하고 전담자가 책임진다. 시험이 종료된 후 제때에 시험지 CD를 소각처리 해야 한다.  **제33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지생성 후 즉시 시험장을 하달하고, 하달시간은 일반적으로 시험시작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험서버에 암호화를 설정해야 한다.  **제34조** 시험종료 후, 시험사무작업인원은 제때에 응시자의 시험문제번호와 문제풀이결과 등 데이터를 암호화기술을 사용하여 수집, 복제하고, 본 규정 제 32조의 방식에 근거하여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에 전용 서버로 전송하고, 시험장 서버기와 시험컴퓨터상에 존재하는 시험문제와 문제풀이결과는 소각한다.  **제5장 시험실시**  **제35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전문책임자를 설치하고, 본지역(부문, 계통)의 회계종업자격시험의 실시작업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36조** 각 시험장은 시험구역을 설정하고, 명확한 경계선을 설치해야 한다. 시험작업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작업인원을 배치하여 시험감독, 순찰 등 시험작업을 담당하게 한다. 작업인원은 시험기간 임무 수행 시, 시험관리기구가 통일 제작하여 발급한 ‘시험감독’, ‘순찰’등의 작업증을 달아야 한다. 시험감독인원은 비 작업인원과 비 응시자가 시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제37조** 각 시험장은 수험생 인원에 따라 감독인원을 배치하고, 시험장 외에도 몇명의 유동 감독인원을 설치해야 한다. 매 시험장(25명 및 그 이하)에는 적어도 2명의 감독인원을 배치하고, 25명의 수험생에서 추가될 경우 1-2명의 감독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감독인원은 시험감독규칙을 숙지해야 하며, 책임감이 있고, 엄격하게 작업해야 한다.  **제38조** 시험사무작업인원은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심사통과 후에야 시험감독, 순찰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9조** 시험사무작업인원 회피제도를 실시하여, 본 시험 응시자와 직계친척 또는 직접적인 직업예속관계인 경우, 본 시험의 시험감독작업을 담당할 수 없다.  **제40조** 시험 전, 시험사무작업인원은 시험정보게시, 전력공급확보, 시험설비시운전검사, 시험소프트웨어 설치, 시험지 도입 등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제41조** 응시자는 입장 시, 시험사무작업인원은 응시자의 신분을 꼼꼼하게 대조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에서는 응시자에 대해 사진등록 또는 지문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제42조** 응시자는 사전에 지정좌석에 입석하고, 신분증번호 또는 수험번호를 시험 시스템에 등록하고, 수험생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시험 시작 후 시험문제의 요구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험시작 30분 후 응시자는 시험장에 진입하여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제43조** 시험진행기간, 시험장 네트워크는 독립된 근거리 통신망이어야 하며, 외부 네크워크의 물리 또는 기술과 격리되어야 한다.  **제44조** 시험진행기간, 시험컴퓨터에 USB, 외장하드, CD 등의 이동식저장설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5조** 시험시스템은 시험과정 중 정시에 자동백업되어 응시자가 문제를 풀고, 응시자가 컴퓨터를 리부팅 또는 교체하는 상황하에서 계속하여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46조** 각 과목시험시작 30분 후, 응시자는 예정된 시간보다 앞당겨서 시험지를 제출할 수 있다. 금번 시험의 최후 과목의 시험지를 제출하면 응시자는 최대한 빨리 시험장을 떠나야 한다.  **제47조** 시험은 시험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험이 종료되면, 시험서버는 자동으로 수권(收卷)된다.  **제48조**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시험규율작업을 강화하고, 시험관리를 강화하고, 시험감독역량을 확대하여, 응시자가 각종 데이터를 저장, 전송 및 통신설비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스크린 샷, 스크린 영상녹화, 스크린 사진, 수공으로 문제를 베끼는 행위를 금지한다. 발견될 경우, 설비를 몰수하고 시험을 중지시키고 시험규율위반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시험기간, 감시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장에서의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하며, 시험장내 사각지역이 없도록 보증해야 한다. 녹화문서를 복사하거나 관련 없는 인원이 보고 조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원격비디오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험장을 감독관리 할 수 있다.  **제50조**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시험기간 시험작업에 대한 감독 및 점검, 선발순찰인원 감독, 시험의 실제상황점검을 강화해야 하며, 시험작업에 협조해야 한다.  **제51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과정에서 시험설비의 심각한 고장, 시험장 정전, 시험장 대면적 내에서의 부정행위 등의 중대 돌발사건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대책안을 마련하고 즉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6장 시험정보관리**  **제52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통일적으로 본지역(부문, 계통)의 시험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시험응시인원, 응시인원 시험결과 및 시험성적 등이 포함되며, 요구에 따라 재정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53조** 회계종업자격시험은 시험은 시험시스템을 통해 시험답안을 채점해야 하며, 인위적으로 응시자의 성적을 조정할 수 없다.  **제54조** 동일한 응시자의 모든 응시과목성적은 한꺼번에 전부 합격해야 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일과목의 시험성적은 회전계산하지 않는다.  **제55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본 지역(부문, 계통)의 금회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험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제56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모든 시험 통과자의 정보를 본급회계종사자 관리시스템에 포함시키고 활성화대기상태로 설정한다.  회계종업자격관리기구는 시험 통과자가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수령 시, 그 정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제57조** 시험시스템일지, 응시자 정보, 시험지 시험문제 일련번호, 문제해답결과, 시험성적의 보관기한은 1년이며, 시험 감시녹화의 보관기한은 6개월이다.  **제58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시험부정행위자의 정보를 즉시 시험참가금지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포함시키고 규정기한 내 회계종업자격시험에 재참여 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제7장 부 칙**  **제59조** 성급재정부문,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 및 중앙주관단위는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본 규정에 따라 본 지역(부문, 계통)의 시험작업규범, 시험장소 확정기준, 수험생 수칙, 시험담당직원의 직책, 위법행위처리규정, 돌발사건 응급 대비책 등 관련 실시 세칙을 제정해야 하며, 재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제60조**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  | **关于印发**  **《会计从业资格考试管理规定》的通知**  财会[2013]19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财务管理司、解放军总后勤部财务部、武警部队后勤部财务部：  为加强会计从业资格考试管理，规范会计从业资格考试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会计从业资格管理办法》（财政部令第73号）的规定，我们制定了《会计从业资格考试管理规定》。现予以印发，请遵照执行。  　　附件：会计从业资格考试管理规定  　　财政部  　　2013年9月25日  附件：  **会计从业资格考试管理规定**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加强会计从业资格考试管理，规范会计从业资格考试行为，根据《中华人民共和国会计法》、《会计从业资格管理办法》等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会计从业资格考试科目实行无纸化考试，考试科目为：财经法规与会计职业道德、会计基础、会计电算化（或者珠算）。  **第三条** 会计从业资格考试遵循统一指导、分级管理的原则。财政部负责管理全国会计从业资格考试工作。具体包括：统一制定和公布会计从业资格考试大纲、考试合格标准，组织开发、建设会计从业资格考试题库及题库软件，指导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以下简称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中共中央直属机关事务管理局、国家机关事务管理局、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后勤部（以下简称中央主管单位）会计从业资格考试工作。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负责管理本地区（部门、系统）会计从业资格考试工作。具体包括：制定会计从业资格考试考务规则、组织会计从业资格考试软件系统的建设及管理、接收并管理财政部下发的会计从业资格考试题库、组织开展会计从业资格考试、监督检查会计从业资格考试考风、考纪，并依法对违规违纪行为进行处理处罚。  **第四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根据本地区（部门、系统）应考人员、考试机位的数量、分布等情况合理制定每年的考试周期、考试计划和考点考场设置。  **第五条** 会计从业资格考试各科目的考试时长、题型、题量、分值、合格标准等考试要求由财政部下发题库时一并公布。  **第二章 考试报名**  **第六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根据实际情况，确定本地区（部门、系统）的报考时间、报考办法、考务规则、考试相关要求、报名条件和考试科目，并提前向社会公布。  **第七条** 报考人员应当按公布的报考时间和办法，到指定的网站（或地点）提交报考申请，填报个人基本信息。  **第八条** 报考人员应当在报考时一次性填报所有三门考试科目。同时组织会计电算化和珠算考试的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允许报考人员在这两门科目中自选其一。  **第九条** 因有《会计法》第四十二条、第四十三条、第四十四条所列违法情形，被依法吊销会计从业资格证书的人员，自被吊销之日起5年以内不得参加会计从业资格考试，不得重新取得会计从业资格证书。  　　因有提供虚假财务会计报告，做假账，隐匿或者故意销毁会计凭证、会计账簿、财务会计报告，贪污、挪用公款，职务侵占等与会计职务有关的违法行为，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人员，不得参加会计从业资格考试，不得取得或者重新取得会计从业资格证书。  **第十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按照当地物价部门核批的标准向应考人员收取考务费。  **第十一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合理确定下一级机构留用的考务费，以保证会计从业资格考试工作的顺利进行。  **第十二条** 会计从业资格考试的考务费，应当专项用于会计从业资格考试工作的各项支出，不得挪作他用。  **第十三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根据考点设置情况，进行或组织指导下一级机构进行考场编排工作，并于考试前向报名成功的应考人员开通登录网站自行打印准考证功能。  **第三章 考点考场设置**  **第十四条** 考点和考场的设置应按照便利、集中的原则，根据报考人数及分布情况合理确定。  **第十五条** 会计从业资格考试考点原则上设在地级以上城市。对于报名人数较多、符合考点设立条件的县（市、区），省级财政部门可以决定在该县（市、区）增设会计从业资格考试考点。  **第十六条** 会计从业资格考试考点应当有独立的电子考场、服务器机房（机柜）、考务办公室、应考人员候考区、卫生间等。应考人员候考区应当配置适当的便民服务设施。  **第十七条** 考点及考场应当安全、安静，宽敞明亮，具有良好的通风性能，并具有防热、防火、防电击等保护措施，以及应急处置能力。  **第十八条** 考点应当配置考试服务器、考试计算机、备用计算机、不间断电源、局域网络等无纸化考试必要的软硬件设备，确保考场满足无纸化考试的要求。  **第十九条** 会计从业资格考试考场应当配置身份识别设备、监控设备等必要的防舞弊设备，防范替考、抄袭、交头接耳、传接物品、使用通讯设备等作弊行为。  **第二十条** 会计从业资格考试考点应当配备必要的技术人员，负责考场软硬件设备的维护以及突发故障的处理。  **第二十一条** 会计从业资格考试考点不得开展会计从业资格考试相关辅导、培训工作。  **第二十二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加强对各考点考场的管理，定期进行评估考核。对不符合条件的考场，应当予以限期改造完善；经改造仍不符合条件的，不得作为会计从业资格考试考场。  **第二十三条** 各考点应当在考点入口处等显著位置标明考点名称，并提前张贴考场示意图、考试时间表和考场规则等。各考场应当在显著位置张贴考场号及考试机位（或座位）起止号。  **第四章 试题的传递和保管**  **第二十四条** 会计从业资格考试试题坚持“分级管理，逐级负责”、“谁接收，谁负责”的原则，由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考点所在地人民政府财政部门（以下简称会计从业资格管理机构）和考点分级落实保密安全责任制。必须按照规定的制度和手续进行交接和保管，做到保密和安全，严防泄密或其他事故发生。  **第二十五条** 会计从业资格管理机构主要负责人应当对本地考试试题保密安全工作负责，承担第一保密责任并签署责任书；应当在正式在编人员中设置专门人员具体负责保密管理工作，承担具体保密责任。  **第二十六条** 全国统一题库由财政部定期以光盘方式下发各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题库的交接必须严格履行交接手续，交接双方各不得少于2人。交接双方应当认真核对移交光盘中的文件等内容，确认无误后进行密封处理，并由双方在交接单上签字。  **第二十七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妥善保管题库，不得再向下级机构或考点整体下发题库。  　　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后勤部因特殊情况确需向下级机构整体下发题库的，须报财政部批准。  **第二十八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提供专用计算机存储题库，并按照涉密单机标准进行防护和管理，张贴明显的密级和责任人标识。该计算机必须与公共互联网进行严格物理隔离，并分两段设置开机密码，或采取开机密码加密钥盘的方式，分别由两个保密员掌管。  **第二十九条** 题库光盘应当在内容导入专用计算机后及时销毁，或存放在专用保险柜中。保险柜钥匙应当由两人分别保管，开柜密码应当分两段设置，由两个保密员分别掌管一段。  **第三十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规范考试工作流程，建立题库保管登记备案制度，禁止无关人员接触存放题库的保险柜或计算机。除考试启用试题或有特殊情况外，不得以任何理由开启专用计算机或题库光盘。  **第三十一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在考试前，在专用服务器上根据题库随机生成考试试卷。试卷生成时应当采用加密技术处理。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严格控制试卷的生成时间，并在充分考虑所需生成试卷数量和服务器工作性能等因素的基础上予以合理确定。  **第三十二条** 根据题库生成的试卷可以采取网络传输或以光盘为载体进行传递：  　　（一）通过财政内网或单位内部专网专线进行传输的，应当采取数字加密技术处理，并指定专人按照相关的操作规范使用专用账号进行一次性操作完成；  　　（二）通过互联网进行传输的，除应当符合上述（一）中所规定的要求外，还应当通过虚拟专用网络（VPN）等技术手段提高传输过程中的保密性、安全性；  　　（三）以光盘为载体进行传递的，应当参照题库的交接和保管方式，由专人负责。当次考试结束后应当及时销毁试卷光盘。  **第三十三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在试卷生成后及时下发至考点，下发时间一般不得超出开考前24小时，并在考试服务器中加密保存。  **第三十四条** 考试结束后，考务工作人员应当及时将应考人员的试卷试题编号和答题结果等数据采用加密技术收集、备份，按照本规定第三十二条的方式传回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的专用服务器，并销毁存放于考点服务器和考试计算机中的试题和答题结果。  **第五章 考试实施**  **第三十五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设置专门负责人，负责组织领导本地区（部门、系统）的会计从业资格考试实施工作。  **第三十六条** 各考点应当划出考试区域，并设置明显的警戒线。应根据考试工作需要，选配必要的考务工作人员，承担监考、巡视等考试组织工作。考务工作人员在考试期间执行任务时，必须佩戴考试管理机构统一制发的工作证，如“主考”、“监考”、“巡视”等。监考人员应当阻止非考务工作人员和非本考场应考人员进入考场。  **第三十七条** 各考场应当按考生人数配备监考人员，考场外应当设若干流动监考人员。每个考场（25人及以下）应当配备至少2名监考人员，每增加25名考生应当增加配备1—2名监考人员。监考人员应当熟悉监考规则、有责任心、工作严格认真。  **第三十八条** 考务工作人员应当接受会计从业资格管理机构培训，并经考核通过后方能承担监考、巡视工作。  **第三十九条** 考务工作人员实行回避制度，凡与本场应考人员有直系亲属或直接工作隶属关系的，不得承担本场考试监考工作。  **第四十条** 考试前，考务工作人员应当做好张贴考试信息、确保电力供应、检查调试考试设备、安装设置考试软件、导入考试试卷等准备工作。  **第四十一条** 应考人员入场时，考务工作人员应当认真核对应考人员身份。有条件的地区可以对应考人员进行照片采集或指纹采集。  **第四十二条** 应考人员应当提前按指定座位入座，录入身份证号或准考证号登录考试系统，阅读考生须知。待考试开始后按照试题要求进行答题。  　　考试开始30分钟后，应考人员不得进入考场参加考试。  **第四十三条** 考试进行期间，考点网络应当是独立局域网，与外部网络物理或技术隔离。  **第四十四条** 考试进行期间，考试计算机禁止连接任何可移动存储设备，如U盘、移动硬盘、光盘等。  **第四十五条** 考试系统应当在考试过程中定时自动备份应考人员答题情况，确保应考人员能够在重启或更换考试计算机的情况下继续答题。  **第四十六条** 每科目考试开考30分钟后，应考人员可提前交卷。本场最后一门科目交卷后，应考人员应当尽快离开考场。  **第四十七条** 考试以考试服务器时间为准，考试结束时间到，考试服务器将自动收卷。  **第四十八条** 会计从业资格管理机构应当加强考试考风考纪工作、强化考务管理、加大监考力度，禁止应考人员将各种数据存储、传输及通信设备带入考场，禁止拷屏、屏幕录像、屏幕拍照、手工抄题等行为。一经发现，应当没收设备，停止考试并按考试违纪处理。  **第四十九条** 考试期间，应当使用监控设备对考场进行全程录像，并保证考场无盲区。录像文件严禁无关人员调看、拷贝。有条件的地区可以采用远程视频监控系统对考场进行监管。  **第五十条** 会计从业资格管理机构在考试期间应当加强对考试工作的监督和检查，选派巡视人员监督、检查考试的实施情况，协助做好考试工作。  **第五十一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对考试过程中出现考试设备严重故障、考场断电、考场大面积舞弊等重大突发事件，或自然灾害、交通事故等不可抗拒因素造成无法正常进行考试的情况，做好应急预案并及时妥善处理。  **第六章 考试信息管理**  **第五十二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统一管理本地区（部门、系统）的考试信息，具体包括：考试报名人数、应考人员答题结果和考试成绩等，并按要求向财政部报送相关信息。  **第五十三条** 会计从业资格考试应当通过考试系统进行评卷，不得人为调整应考人员成绩。  **第五十四条** 同一应考人员所有报考科目考试成绩一次性全部合格的，视为通过考试。单科考试成绩不滚动计算。  **第五十五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在本地区（部门、系统）本次考试全部结束后30日内公布考试结果。  **第五十六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在公布考试结果的同时，将所有考试通过人员信息导入本级会计从业人员管理系统并设置为待激活状态。  　　会计从业资格管理机构应当在考试通过人员领取会计从业资格证书时将其信息激活。  **第五十七条** 考试系统日志、应考人员信息、试卷试题编号、答题结果、考试成绩的保管期限为1年，考试期间监控录像的保管期限为6个月。  **第五十八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将考试舞弊人员信息，及时纳入禁考人员数据库管理，在规定期限内不允许再次参加会计从业资格考试。  **第七章 附 则**  **第五十九条** 省级财政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和中央主管单位应当结合实际，按照本规定制定本地区（部门、系统）的考试工作规范、考点考场设置标准、考生守则、考务工作人员职责、违规违纪行为处理规定、突发事件应急预案等相关实施细则，并报财政部备案。  **第六十条** 本规定自2013年10月1日起施行。 |